

전남대학교 교학규정

[시행 2026.2.1] [전남대학교교학규정 제2182호, 2026.2.1, 일부개정]



전남대학교 교무처 062-530-1023

제40조(출석인정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<개정 2025. 5. 30.>

1.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
2. 승선실습(출항) 또는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[승선실습(출항) 기간, 교육실습 기간]
3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 (훈련)기간]
4.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)
5. 다음 경조사의 경우

구분	
기간	
결혼	
본인	
5일	
자녀	
1일	
출산	
본인	
20일	
배우자	
10일	
사망	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
5일	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
3일	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
3일	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	
1일	

(※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·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)<개정 2020.12.1.>

6.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<개정 2020. 6. 3.>
 7. 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<개정 2022. 7. 11.>
 8.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. 다만, 월 1일에 한함. 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<신설 2023. 3. 6.>
- ②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 제2호, 제3호, 제6호, 제7호는 예외로 한다.<신설 2024. 3. 1.>
- ③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.<개정 2024. 3. 1.>

제40조의2 2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) ① 소속 학과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「예비군법」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.

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학습자료제공, 과제물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4. 3. 1.]

부칙 <제2182호,2026.2.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표1] 학과(부)·융합전공별 졸업소요학점 구성표(2026학년도 입학자용)는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